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55
----------	-------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김선교 · 최수진 · 구자근  
김성원 · 김상훈 · 김대식  
박준태 · 김미애 · 윤상현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여,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정원을 못 채우고,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은 더욱 취약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의사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를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군인보수의 한도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보건 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 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u>군사 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u> 한 다.</p> <p>② · ③ (생략)</p> <p>제11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공중보건 의사에게 <u>군인보 수의 한도에서</u> 보수를 지급한 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호 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 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 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 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 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p> <p>② ~ ⑤ (생략)</p> <p>⑥ <u>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 ----- ----- ----<u>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 여 2년으로</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보수 등) ①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적정 수준의</u> ----- ----- -----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